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22-114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노인복지 기금의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목적성을 상실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정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2. 10. 6. ~ 10. 26.(20일) (제출된 의견 없음)
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 없음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22.11.3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폐지조례안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 제2항
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: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김민음 (3153-8857)